
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|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<b>보 도 자 료</b> |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보도             | 2020. 5. 7. (목)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| 배포<br>2020. 5. 6. (수) |
| 담당부서  | 불법금융대응단        | 이원하 부국장(3145-8129), 안신원 수석조사역(3145-8121) |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제 목 : 2019년 금감원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」 운영실적

- '19년중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」(이하 “센터”)에 접수된 총 상담·신고건수는 115,622건으로 '18년(125,087건) 대비 9,465건(△7.6%) 감소

  - 최고금리 위반(9.8%↑)은 다소 증가하였으나, 불법채권추심(△29.3%↓), 미등록 대부(△17.0%↓), 유사수신(△45.8%↓), 보이스 피싱(△24.4%↓) 상담·신고는 '18년 대비 감소

-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상담·신고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(214건)하고,

  - 피해구제 및 자활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(225건) 또는 서민금융대출 상품(803건)을 안내
  - 보이스피싱 상담·신고 1,416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

※ 참고로 '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\*하고 있는 바, 금융거래시 다음 사항을 유의

\* '20.1~4월 총 상담·신고건수는 43,127건으로 '19년 동기 대비 18.8% 증가하였으며, 불법사금융(고금리, 채권추심 등) 상담·신고는 2,313건으로 56.9% 증가(상세 내역은 향후 분석 예정)

①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\*

\* 검색 사이트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“제도권 금융회사 조회/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” 메뉴에서 확인

② 대부업체 거래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, 녹취록 등 본인의 대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피해구제에 대비

③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「서민금융 1332」에서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한 후 이용

# 1 상담 및 신고 내용 분석

## 가. 상담 및 신고건수

□ (총 건수) '19년중 총 상담·신고건수는 115,622건(일평균 466건)으로 '18년(125,087건) 대비 9,465건 감소 (△7.6%)

- '12.4월 센터 출범 이후 누적 877,671건의 불법사금융·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·대응하고 있음
- '14년 이후 계속하여 연간 상담·신고건수가 10만건을 상회하는 등 센터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담창구라는 인식이 자리매김

연도별 센터 상담 및 신고건수

| 구분    | '12년   | '13년   | '14년    | '15년    | '16년    | '17년    | '18년    | '19년    | 합계  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건수(건) | 85,964 | 81,158 | 115,903 | 135,494 | 118,196 | 100,247 | 125,087 | 115,622 | 877,671 |
| 증감율   | -      | △5.6%  | 42.8%   | 16.9%   | △12.8%  | △15.2%  | 24.8%   | △7.6%   | -       |

□ (내용별 건수)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7,700건 (67.2%)으로 가장 많고,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32,454건(28.1%),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 2,464건(2.1%) 順

-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6,650건(47.2%)으로 가장 많고,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이 20,385건 (26.2%),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18,851건(24.3%) 順

상담 및 신고 건수 (단위: 건, %)

| 구분    | 단순상담*  | 불법사금융 |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| 유사수신 | 보이스피싱  |
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
|       |        | 고금리   | 불법채권추심 | 미등록대부 | 불법중개수수료 | 불법대부광고 |      |        |
| 건수(건) | 77,700 | 569   | 402    | 2,464 | 98      | 1,453  | 482  | 32,454 |
| 비중    | 67.2   | 0.5   | 0.3    | 2.1   | 0.1     | 1.3    | 0.4  | 28.1   |

\* 법정이자율, 서민대출상품, 채무조정 방법,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 안내 등

## 나. 상담 및 신고 유형별 현황 분석

- **(단순상담)** 법정이자율 상한\*, 서민대출상품, 채무조정 방법, 채권 소멸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 상담 및 문의가 77,700건으로 '18년(75,360건) 대비 다소 증가 (3.1% ↑)

\* 법정최고이자율은 24%(사인간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10만원 미만은 미적용)

- **(고금리 및 불법사금융 신고)** 그 간의 지속적인 홍보 및 피해 최소화 노력 등으로 미등록대부(2,464건), 채권추심(402건) 관련 상담 및 신고 건수는 감소(각각 △17.0%, △29.3% ↓)하였으나,

-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하\* 등으로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 및 신고건수(569건)는 '18년(518건) 대비 9.8% 증가

\* 법정이자율 상한 : ('14.4월) 34.9% → ('16.3월) 27.9% → ('18.2월) 24.0%

- **(유사수신)**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(482건)는 '18년(889건) 대비 대폭 감소 (△45.8%)

-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(116건)이 '18년(604건) 대비 대폭 감소한데 기인 (△80.8%p ↓)

- **(보이스피싱)**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(32,454건)는 '18년(42,953건) 대비 24.4% 감소

-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상담·신고는 감소하였으나, SMS를 통한 스미싱(3,461건) 상담·신고가 '18년(990건) 대비 249.6% 증가

상담 및 신고 유형별 분류 (단위: 건, %)

| 구분       | 단순 상담 등       | 불법사금융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유사 수신         | 보이스 피싱           | 계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| 고금리        | 불법 채권추심       | 미등록 대 부       | 불법중개 수수료     | 불 법 대부광고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'18년     | 75,360        | 518        | 569           | 2,969         | 134          | 1,695         | 889           | 42,953           | 125,087        |
| '19년     | <b>77,700</b> | <b>569</b> | <b>402</b>    | <b>2,464</b>  | <b>98</b>    | <b>1,453</b>  | <b>482</b>    | <b>32,454</b>    | <b>115,622</b> |
| 증감 (증감율) | 2,340 (3.1%)  | 51 (9.8%)  | △167 (△29.3%) | △505 (△17.0%) | △36 (△26.9%) | △242 (△14.3%) | △407 (△45.8%) | △10,499 (△24.4%) | △9,465 (△7.6%) |

## 다. 조치내용

□ **(수사의뢰)**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\* 상담 및 신고 5,468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14건(유사수신 186건, 불법사금융 28건)에 대하여는 수사당국(검찰·경찰)에 수사의뢰\*\*

\* 미등록·등록 대부업자의 초과이자 수취,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, 불법 채권추심 등

\*\* 수사 의뢰를 위해서는 피해자 및 범죄혐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신고·상담자가 본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거나 범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수

□ **(계좌 지급정지)**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·신고 접수된 32,454건 중 피해신고 1,416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\*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\*\*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

\* 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피해자가 상대은행에 피해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

\*\* 신고자가 사기범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았으나 사기가 의심스러워 송금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해당 계좌번호를 각 은행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모니터링

○ 대부분은 전화 또는 스팸을 받았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, 이런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\*할 것을 안내

\*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([www.boho.or.kr](http://www.boho.or.kr))에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송부하면 전화번호 이용정지가 가능함을 안내

□ **(피해구제·자활 안내)** 고금리, 불법추심,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,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\*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(최고금리 위반) 또는 채무자대리인(불법추심)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하여 피해 구제를 진행

\* 채권자의 신원을 알고 피해 증빙이 가능한 경우

- 피해자가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법률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

○ 대출사기,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또는 단순상담건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803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하여 자활을 유도

## 2 주요 신고사례 및 유의사항

### 상담사례 1 법정 최고이자율 및 불법추심 상담

-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·카페를 통해 알게된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례

#### 고금리 대출·미등록 대부업자 피해사례

- ◆ '19.12월 김○○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인 ○○나라의 실시간 상담 코너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
  - 5분 뒤 대부업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조건을 설명
  - 대출기간 1주일, 원리금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차입(연금리 환산시 3,128%)
  - 김씨는 차입 1주일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, 대부업자는 50만원(연장 수수료)을 납입하고 대출을 연장하거나 또는 3시간당 10만원의 연체이자를 요구
  - 김씨는 50만원을 납입하고 같은 조건(대출기간 1주일, 80만원 상환) 대출을 연장하였으나, 다시 돌아온 1주일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가족지인에게 전화하여 폭언, 욕설, 협박을 하며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

### 소비자 유의사항

- 대부업자가 금전대부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**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%\***이며,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금전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이자에 포함되어야 함

\* 24%는 연 이자율이며, 최고 이자율(24%)인 경우 1일 이자율은 0.0657%(24%÷365)임

-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대출금액 상계에 충당하고, 충당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부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
- 따라서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, 녹취록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고금리 분쟁에 대비

- 공공기관(또는 금융회사) 등을 사칭한 SNS 대출 광고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중고차 대출을 위한 중고차 판매, 신용관리,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례

**SNS 대출광고를 통한 중고차담보 대출사기 피해사례**

- ◆ '19.10월 이○○씨는 SNS상 공공기관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
  - 대출업체가 요청한 대출관련 서류를 제공하였으나, 업자의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통보받음
  - 대신, 중고차를 구입하면 소득증빙 필요없이 차량가액의 2~3배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하여 중고차를 구입
  - 이후 대출 진행시 33%의 수수료를 편취하고, 대출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로 지급하는 등 절차상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

**소비자 유의사항**

- 문자,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
  - ① 문자,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대출받고자 할 경우 먼저 해당업체가 정식 등록\*된 금융회사인지 확인
    - \* 검색 사이트에서 **파인** 두 글자를 치고 "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" 메뉴 또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 (한국대부금융협회, <http://www.dfa.or.kr> ⇒ 등록업체조회)에서 확인 가능
  - ② 특히, 인터넷 대출 광고 중에는 적법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상호, 로고, 영업용 전화번호 중 일부분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상당
    - 해당 기관의 공식 상담센터와 통화하여 확인후 진행
  - ③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수수료,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임

- 주로 최신 금융기법 또는 유행 아이템(가상화폐, 리츠, 펀드 등)으로 포장하여 현혹한 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

**유사수신 피해사례**

- ◆ '19.7월경 인천에 사는 박00씨는 지인의 소개로 ○○○자산운용(제도권 금융회사로 가장)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1천만원을 투자
  -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매월 1% 배당 수익금(월 10만원 확정배당)과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고, 계약기간 만료시 상호 협의하에 자동 연장하는 조건
  - 2년간 매월 10만원씩 수익금(총 240만원)을 지급받았으나, 이후 수익금이 없었으며 동 회사의 사장은 잠적
- ◆ ○○○○협동조합은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친환경 고효율 무동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을수 있다며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
  - 발전기 1대에 2,200만원을 투자하면 연 900만원씩 투자금의 10배까지 보장한다고 광고

**소비자 유의사항**

- 다음과 같은 경우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사기를 의심
  - 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·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
  - ② 특히, 펀드, 핀테크, 리츠 등 최신 금융기법을 빙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
  - ③ 금융소비자정보포털 **파인**에서 해당업체 **조회\***시, 금융당국으로부터 인·허가 등을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

\* 검색 사이트에서 **파인** 두 글자를 치고 "제도권 금융회사 조회" 메뉴에서 확인

### 3 소비자 당부사항

- ① **(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)**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 「금융소비자정보포털」 파인(<http://fine.fss.or.kr>)의 제도권금융회사·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
  - 조회 결과 전화번호, 등록번호, 상호를 꼭 대조하고, 이 중 한가지라도 불일치시 불법대출 또는 금융사기를 의심
  - 유사수신 업체는 적법한 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등록된 방문판매로 위장하므로 유의
  
- ② **(피해발생시 신고)** 고금리, 불법채권추심, 미등록 대부등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의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에 신고\*
  - \* (전화) 국번 없이 1332 누르고 3번, (핸드폰) 어플 "보이는 1332"에서 3번
  - 피해발생시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,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등 유관기관 서비스를 연계
  - 피해신고시 휴대폰 녹취, 사진,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
  
- ③ **(서민금융제도를 활용)**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「서민금융1332」 홈페이지의 '서민금융지원' 코너(<http://www.fss.or.kr/s1332>)에서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한 후 이용
  - 또한,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게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

- 금감원은 고금리,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(☎1332)」 (이하“센터”)를 운영중
  - 센터는 피해자가 별도 복잡한 절차없이 불법사금융에 관한 피해 사실을 간단히 유선 신고할 수 있는 1:1 방식으로 운영
  - 피해자가 신고내용의 수사의뢰를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원-스톱(One-Stop) 체계도 구축
  - 시의성 있는 신고내용의 보도,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
  - 법정이자율 안내, 서민대출상품·채무조정 등에 대한 문의,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서민들의 금융관련 애로사항 해소
  
- 또한, '19.9월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」의 상담사례 및 불법사금융 대응요령\*을 책자로 발간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
  - \* 주요내용 : 법규.판례 및 통계, 유형별 실제 신고 및 상담 사례, 체크리스트 유의사항 등
  -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을 상세히 안내·전파함으로써 일반국민의 불법사금융 대응 능력을 제고
  
- ➔ 책자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전문 상담역 교육을 강화하여, 피해자·제보자에게 종합적·체계적인 상담을 제공